

書 評

- 喜多野清一. 1976. 『家と同族の基礎理論』. 東京: 未來社.
 有賀喜左衛門. 1943. 『日本家族制度と小作制度』. 東京: 河出書房.
 藤井 勝. 1997. 『家と同族の歴史社會學』. 東京: 刀水書房.

일본의 이에(家:イエ)의 실체에 관한 이론과 일본사회의 이에적(家的) 구성

임경택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상근연구원

1. 家(イエ)란 무엇인가?—서평대상의 선정

일본의 이에(家:イエ)란 무엇인가? 일본의 근세사회는 家원리에 의해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치이후의 근대화과정에 있어서도 일본사회의 기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家적 구성’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家는 근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의 일본적 특질을 해명하는 핵심 개념임과 동시에 일본의 근대는 무엇이었던가라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인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일본의 家에 관한 연구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화 상황 안에서 사회·인문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공통의 주제가 되어 왔고, 문학·영화·연극에서도 주요한 테마가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家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 점에 관해 川島武宜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家란 무엇인가? 종래, 家에 관해서는 많이 이야기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항상 자명한 존재로 여겨진 채 그 내용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 원인은 家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까운 존재라는 것과 家를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다”(1957: 32). 그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여태까지의 일본의 家연구가 가족이나 경영체라는 내부적 관점에서만 연구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일본의 家는 가족과 경영체를 내포하면서도 그 자체는 가족이나 경영체를 초월한 제도이며 단위라는 것이다. 家는 어떠한 사회기준에 의해 설정된 단위인가? 이것을 해명하

는 것이 일본의 家가 지녀 온 독자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것과 이어져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家에 관한 연구의 기점이 되는 두 저작을 재검토하고, 그것들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최근의 저작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家の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家の 개념을 토대로 일본사회 전체의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家の 실체에 관한 이론과 각각의 특징

1. 가족으로서의 家(イエ)

현재까지의 일본의 家와 도조쿠(同族)의 연구는 2가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가족과 친족론의 관점이며, 또 하나는 경영과 가업의 관점이다. 전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해 온 것은 법제사의 친족법·가족법의 분야와 (특히 서구인류학자에 의한) 인류학 및 사회학의 가족론이다. 인류학·사회학의 분야에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家와 同族연구를 수행한 대표자의 한 사람이 喜多野清一(이하 喜多野만으로 표기)이었다.

喜多野가 일본의 家연구에 있어서 가족론의 관점을 강조한 것은 家를 경영체나 생활체로 보는 有賀喜左衛門 등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었다. 喜多野에 의하면 家를 경영체나 생활체로 간주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家の 家다운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영체나 생활체는 家 이외의 사회집단으로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家가 사회집단으로서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질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내부에 '가족결합'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家를 파악하지 않는 한 그 본질을 규명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喜多野는 '家도 또한 가족에 다름 아니다'라고 한다. 따라서, '家를 사회집단으로서의 일반적인 가족의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적 형태라고 생각하며 가족일반과의 관련에 있어서, 그 유형적 자리매김을 문제'로 삼고자 하였다. 즉, 家를 일본의 가족사에 있어서 하나의 유형으로서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그 유형으로서 설정된 것은 가부장제적 전통을 지닌 가족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家를 가부장제적 가족으로 정의한 것은 喜多野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이미 戸田貞三의 가족론에서 볼 수 있었으며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 정의는 많이 볼 수 있다. 제2차 대전 이전의 민법이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될 것이다.

敗戰前의 민법은 호주와 그 밑에 있는 가족의 일단을 '家'라 불렀다. 이 경우에 가족이란 호주이외의 家の 성원을 가리키고 있지만 가족은 통상 호주와 친족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家는 하나의 친족집단이고 오늘날의 가족이라는 개념과 동의어인 것이다. 단지 민법상의 家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호적상의 것으로서 그것은 가족으로서의 생활실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분개(分家)라는 것도 민법상에서는 호적을 나누는 것이었을 뿐 생활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민법에서는 가부장권에 해당하는 것을 호주권이라 하였고 家は 호주권에 의해 통할되는 친족단체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家は 가부장제적 가족이었다. 하지만 가부장제적 가족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는 일가 내에 가장권과 병행하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一家一權이지는 않았다. 大宝令 이래 호주권과 친권을 양립시키는 전통을 지켜왔던 까닭에 민법상의 호주권도 그다지 강고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주요 내용은 가족단체 구성에 관한 권리에 머물렀다. 호주의 가족부양의무도 그 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 이어 제4위에 놓여졌으며 가족의 거주지 지정권조차 그것을 남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더욱이 민법은 법률관계의 전부를 개인법적 관계에 환원시켜, 家の 단체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의 규정은 근대법으로서의 성격은 지니고 있었지만 家が 가부장제적 가족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家は 현실적으로 가족에 의해 구성되고 기능을 수행해 왔으므로 家를 가족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喜多野의 문제제기는 귀중한 것이었다. 그 때 喜多野는 戸田의 소가족론을 계승하여 가족을 부부결합을 중핵으로 하여 그 직계가족을 잇는 소결합이라 규정하고, 그것을 '핵적 소결합'이라든가 '핵으로서의 소가족'이라 칭하였다. 일본의 家は 이와 같이 핵이 되는 가족의 단수 혹은 복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그것은 家와 同族을 가족관계나 친족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해가고자 하는 喜多野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喜多野가 이론화에 성공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첫째 이유는 喜多野의 가족론이 소위 가족결합의 본질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논의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喜多野는 戸田의 이론을 계승하여 가족결합의 가장 기본적인 특질을 가족원상호간의 감정적 융합, 인격적 신뢰에 의한 합일화, 상호간의 생활안전보장이라는 '심적 태도'나 '내면적 결합'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家와 同族을 가족관계나 친족조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족결합의 본질론을 넘어서 가족적 제관계나 친족적 제관계 안에서 각각의 지위가 지니고 있는 권리·의무의 관점에서 가족제도나 同族관계를 분석해야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喜多野의 家와 同族 이론은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家를 가부장제적 가족이라 정의한 喜多野는 家와 同族에 있어서의 제관계를 대부분 가장(혹은 가장권)과 가족원과의 관계로 이론화하였다. 喜多野가 家=가부장제적 가족에서 강조한 것은 가장의 가족원에 대한 비호=부양과 가족원의 가장에 대한 효심의 정에 따른 복종이었다. 그리고, 分家에 대한 가산의 分与도 本家の 가장이 권력을 임의로 발동시킨 것으로서 그 권위의 발현으로 행해진다고 해석하였다. 가부장제와 가장의 개념은, 본래 지배형태에 관한 것으로 친족관계에 관한 개념이 아니므로 이러한 개념으로 家와 同族을 이론화하더라도 家와 同族에 있어서 가족관계나 친족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喜多野는 일본의 家를 가부장제적 가족으로 규정하더라도 青山道夫가 비판하는 것처럼 일본의 家에 대해서 가부장제적 가족으로서의 발전과 특질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喜多野의 가부장제 개념은 대부분 유럽학자들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며

그것을 일본의 현실에 적용하여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가부장권이라 해도 그 권리와 의무의 내용은, 오야코(親子)관계에 있어서의 父權,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夫權,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주인권 등, 각각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것들을 일본의 현실에 맞추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의 家를 가족과 친족관계의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 喜多野의 경우는 일부터 가부장권이라 일괄하지 않고 그것을 父權과 夫權, 혹은 친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분가창설에 대해서도 친권에 의한 분할상속에 근거한 친족분가의 창설과 주인권에 의한 비친족분가의 발탁이라는 양자가 지닌 본질적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일본의 家와 同族을 가족과 친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큰 문제는 일본의 家와 同族에는 비친족의 성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喜多野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유럽의 세대공동체, 부양공동체, 경영공동체의 개념에 의거하여, 가장의 부양 하에 있으며, 가장의 권위에 승복하는 사람은 비록 비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家의 성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공동체와 부양공동체의 개념과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을 근친관계에 의해 구성된 소집단으로 정의하고 그 가족론 위에서 일본의 家를 가부장제적 가족이라고 정의한 것 사이에는 분명히 개념상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家와 同族에 비친족의 성원이 포함되는 것은 가족관계나 친족관계를 '의사화'하여 성원이 된 것이 아니다. 비친족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원상호간에 명확히 인지하고 성원이 된 것이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는 단지 家와 同族에 비친족인 사람이 성원으로서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家株(이에카부)를 비친족의 사람이 계승하는 것도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家와 비친족인 사람들의 관계는 喜多野와 같이 유럽의 가부장제 개념과 세대공동체 등의 개념을 차용하여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일본의 家가 지닌 독자적인 관념과 제도로부터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喜多野는 만년의 저작에서도 '同族조직은 그 결합의 성격으로 볼 때 당연히 친족조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1975: 3)고 하였다. 그러나, 同族이 친족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本家와 친족分家와의 범위 내에서만이며 비친족分家까지도 포함한 同族일반을 친족조직으로 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일본의 家가 가족을 내포하고 同族이 친족分家を 내포하고 있는 한 양자의 내부에 어떠한 가족관계와 가족제도가 내재하고, 또한 어떠한 친족관계와 친족제도가 존재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일본의 家와 同族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의 가족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家제도의 해체에 수반하여, 家는 가족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고 同族도 친족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현저하게 나타내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관점은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하게 자각해야 할 것으로서 그 한계를 넘어 일본의 家를 즉 가족이라고 또 同族을 즉 친족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오류이다. 家는 가족을 내포하면서도 그것 자체는 초가족적 성격을 띤 존재이며 同族도 또한 친족적 성격을 내포하면서도 그것 자체는 친족조직이 아니다. 그러

한 의미에서 中野卓와 中根千枝가 일본의 ‘家’와 ‘가족’의 양개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지당한 제언이라 할 수 있다.

2. 경영체로서의 家

家を 경영체나 기업 혹은 생활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해 온 것은 주로 경제사의 분야이다. 법제사에서 石井良助는 기업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외에도 법제사, 법사회학분야에서는 동일한 견해가 적지 않다. 인류학·사회학에서는 有賀喜左衛門(이하 有賀만으로 표기)의 이론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다.

有賀의 학문연구의 출발점은 柳田国男민속학의 영향하에 있었다. 有賀의 학문연구의 시점이 일관적으로 민중의 일상생활에 집중되어 있는 점, 현존하는 민속자료를 바탕으로 원형 혹은 원형소금을 추구하는 점, 그리고 그의 연구과제가 家연구를 포함하여 항상 일본문화의 민족적 특질의 해명에 있었다는 점 등은 민속학의 영향을 다분히 받은 것이었다.

다만, 有賀의 학문연구의 중추에 ‘생활’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은 柳田민속학으로부터 그대로 계승한 것은 아니다. 柳田민속학의 생활개념이 지니고 있는 무한정성과 무조직성에 부족함을 느꼈던 有賀는 생활에 내재하는 사회관계에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것을 有賀는 ‘생활관련’이나 ‘생활조직’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생활일반의 사실과 현상을 ‘사회관계적 의미’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길을 개척하였다. 동시에 家와 생활을 둘러싼 사회적 체관계를 ‘사회구조’로서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전개시켰다.

有賀가 일본의 家와 同族연구에 들어서게 된 계기는 소작제도의 연구에 있었다. 1920년대에 일본자본주의의 半封建制를 둘러싼 講座派와 勞農派의 대립의 하나가 소작제도의 해석에 있었는데 有賀는 이 문제에 대해 민속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후의 有賀의 家와 同族이론에 커다란 특징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산촌, 벽지에는 나고(名子)라고 불리는 근세초기적인 중속농민제도가 뿌리깊게 잔존하고 있었는데, 소작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名子제도도 소작제도의 원형으로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 名子は 지주로부터 소작지를 차용할 뿐만 아니라, 지주에 대해 ‘부역(賦役)’이라 불리는 노무제공의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名子소작’이라 하였다. 그리고, 경제사가들은 名子の 賦役을 유럽경제사의 해석을 모방하여, 그것을 勞働地代라 해석하였다.

그러나, 有賀의 해석은 이것과는 달랐다. 有賀는 名子の 賦役을 오야카타(親方)百姓과 고카타(子方)百姓간에 맺어지는 비호와 봉사의 관계 중에서 子方百姓의 봉사행위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즉, 名子の 賦役을 親方·子方라고 하는 ‘사회관계적 의미’에서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有賀는 자신의 유명한 모노그래프인 「岩手県二戸郡石神村에 있어서 대가족제도와 名子제도」(1937년)에서 성공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모노그래프는 문헌사료로서는 남기 어려운 名子제도의 관행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역사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家를 둘러싼 사회적 제관계의 구조를 광범위하게 파악해 넘으로써 현대사회과학의 방법의 선구로서도 걸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有賀의 家이론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家는 농업경영을 중심으로 한 생활관련으로 파악하고 있다. 家는 생활집단이고, 생활공동체이다. 그리고, 후기에 이르러서는 경영이라는 관점을 한층 더 선명히 하여 家를 '부부중심의 가업, 가산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업이란 일종의 기업경영의 형태'이며 '家는 가업과 가산을 운영하는 집단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가업경영에 있어서 그 내부에 공동으로 존재한다면, 비록 비친족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家의 성원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더욱이 有賀의 家이론의 또하나의 특징은 그 원형소급의 방법론과 맞물려 있어서, 근현대의 일본의 家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형 혹은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점에 있었다. 그래서, 名子の 賦役을 규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 부상한 것이 근세초기의 농민의 家였던 것이다. 일본의 家를 그 내부의 경영과 생활관련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론화한 것은 有賀의 큰 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有賀의 家이론에 대해서도 몇 가지의 의문점이 남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첫째, 家란 어떠한 사회단위를 가리키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애매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家를 경영체나 생활체로 보는 경우 名子は 親方百姓의 지주경영에 賦役을 제공하고 생활면에서도 각종의 비호를 받고 봉사하는 상호급부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親方百姓의 지주경영과 생활체에 농사나 가사의 부역을 행하고 있는 종속농민의 가족은, 親方百姓의 家의 성원이고 親方百姓과 종속농민의 각 가족을 합친 一團을 하나의 家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혹은 名子 등의 종속농민의 가족도 생계 및 거주상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경영상에서도 소작경영체로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으므로 親方百姓의 가족과 종속농민의 가족을 각각 하나의 家를 형성하고 있다고 간주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한 애매모호함은 有賀자신의 저작에도 나타나고 있다. 초기저작에서는 親方百姓과 종속농민의 각 가족을 포함한 일단을 하나의 家로 보고 그것을 分居制大家族이라 하였다. 그러나, 中野도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본가족제도와 소작제도』부터 점차로 그 일단을 同族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종속농민의 家도 하나의 家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家라는 말은 지극히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서, 親方百姓의 가족도 家라 부르고, 名子の 가족도 家라 부르고 있다. 石神村의 예를 들면, 급사 및 호오코오닌(奉公人)과 와라지누기(ワラジヌギ)를 名子로 승격시키는 경우에 '家(에-)를 가지게 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親方百姓의 家와 종속농민의 家라는 것은 경영과 생활관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자간에는 단지 주종적 관계와 親方·子方관계만이 보이지만 일본의 전통적인 家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종류의 家는 과연 동질의 家인 것일까?

이러한 문제는 '分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문제가 존재한다. 有賀를 비롯한 여태까지의 分家개념은 本百姓으로서 분가시키는 것과 종속농민으로서 주거, 생계, 경영상에서 분립시키는 것을 두고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分家'라 불러 왔는데, 家의 관념

과 제도에서 보면 이 두 종류의 분가는 과연 동질의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本百姓과 종속농민이라는 신분의 차이에 따라 家の 관념과 제도는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점, 즉 家は 신분과 연관하여 이질적이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이다.

둘째, 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有賀의 경우 농민의 신분관계라는 것이 선명하지 않다는 의문이 생긴다. 有賀는 名子라는 종속농민제도를 오로지 경영과 생활관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親方·子方관계만을 문제시하였다.

그러나, 종속농민이라는 것은 본래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親方百姓 대 子方百姓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本百姓 대 종속농민의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本百姓과 종속농민의 ‘신분관계’는 반드시 경영과 생활관련에 있어서 親方·子方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에도시대에는 상당히 높은 생산량을 내던 농민(‘高持百姓’)이라도 종속농민인 경우가 많았으며 반대로 종속농민을 전혀 데리고 있지 않은 자작농과 소작인이었던 사람들 중에도 本百姓신분인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本百姓과 종속농민의 ‘신분관계’는 반드시 경영과 생활관련에 있어서 親方·子方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양자의 관계는 분명히 별종의 것이다. 그러나, 有賀를 비롯한 여태까지의 견해는 이 두 관계를 혼동해오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有賀의 石神村조사를 보면 종속농민으로서의 신분관계에 있어서 는 전답의 대차관계=지주·소작관계보다는 가옥부지의 대차관계가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답의 대차관계만이라면 本百姓끼리에도 많이 행해졌던 것으로, 그 대차관계로 인해 本百姓이 다른 本百姓의 종속농민이 되는 일은 없다. 즉, 전답의 대차관계=지주·소작관계는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이러한 ‘신분관계’에 있어서의 요인은 오히려 가옥부지의 대차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가옥부지가 本百姓과 종속농민과의 신분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가를 설명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本百姓과 종속농민의 신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家の 관념과 제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을까라는 것이다. 有賀는 이러한 사실들을 石神村의 모노그래프에서는 극명하게 기술하면서도 家の 이론화과정에서는 중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本百姓이라는 신분과 자격은 경영과 생활상 종속농민을 데리고 그 親方百姓이라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檢地帳에 가옥부지가 등재되어 그 소지를 공인받은 사람이다. 그와 동시에 ‘한 집분(一軒前)의 家’ 혹은 ‘한 집분(一軒分)의 백성’으로서 공인받은 사람들이다. 종속농민신분이란 가옥부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한 집분(一軒前)의 家’로 공인받지 못한 사람이다. 本百姓에게서 가옥부지를 입차한다는 것은 本百姓에 의해 대표되는 家내의 사람, 즉 그 家の 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本百姓과 종속농민의 주종적 관계라 불리어 온 것은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家적’인 관계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넷째, 앞에서 자작농 혹은 지주경영으로 추측되는 ‘高持百姓’ 중에도 종속농민이었던 자가 많이 있다고 기술한 바가 있다. 이는 하나의 家가 하나의 경영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복수의 경영체가 하나의 家 안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를 포함하여, 有賀가 분거제대가족이라고 불렀던 근세농민의 家의 경우에는 하나의 家 안에 복수의 가족과 경영체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家라는 사회단위와 경영체와 가족이라는 단위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경영체라는 단위가 家의 단위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로부터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영과 생활관련이라는 것이 家의 내부구조로서는 확실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家란 경영과 생활관련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들의 단위가 家의 단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本百姓신분과 종속신분도 마찬가지이다. 家와 百姓신분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별개의 사회적 존재이며 제도이므로, 경영과 생활관련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일본의 家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有賀는 家에 있어서 친족관계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有賀가 중시한 것은 적계인가 방계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는 家와 同族에 있어서의 ‘상속’, 특히 ‘분할상속’의 경지로 이어진다. 그러나, 비록 같은 종속농민으로서의 분립이라 하더라도 분할상속에 의해 분립된 ‘血縁明子’와 奉公人과 와라지누기를 종속농민으로 승격시킨 비친족의 종속농민과의 사이에는 本家와의 관계나 경영과 생활조건상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同族관계에 있어서도 친족分家와 비친족分家の 차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이다.

여섯째, 有賀는 家를 경영체나 생활체로 봄으로써 家를 오로지 그 내부구조와 대내적 관계의 관점에서만 파악하였다. 이는 家를 가족과 친족관계에서만 파악한 喜多野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家는 과연 경영이나 생활체 혹은 가족이라는 대내적인 관계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예를 들면, 福島正夫의 연구(1967)에 의하면 1946년에도 新宅분가를 행하는 경우에는 本家の 호주는 우선 ‘무라(村)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한다. 그 부락의 호주전원과 협의하여, 일치된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分家を 낼 수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는 에도시대 중기부터 엄격한 分家금지의 조치가 취해져 온 것도 각 家의 경제조건에서 볼 때 分家を 내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이유 이상으로, 村에 의한 분가금지의 엄격한 규제가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토지를 나누는 것이 ‘사적’인 사항으로서 부모나 호주에게 인정받은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家’로서 인정받을 것인가 아닌가는 이미 사적인 사항이 아니라 ‘村의 사항’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이주자가 타노미(タノミ)本家を 취하거나 혹은 本百姓의 家의 종속농민으로서만이 거주가 인정되었던 것과는 관련이 있다.

有賀는 村과 家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村을 家연합으로서 파악할 것을 제창하였지만, 일본의 村과 家 특히 근세의 村과 家와의 관계는 그 이상 훨씬 더 긴밀하였다고 생각된

다. ‘한 집분(一軒前)의 家’로 공인할 것인가 아닌가는 村에 그 의사결정권이 속해 있었다고 사료된다.

일곱째, 本百姓과 ‘한 집분(一軒前)의 家’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本百姓株나 家株 혹은 百姓名跡을 취득해야만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이러한 면도 일본의 家가 단순히 가족이나 경영체 혹은 생활체로서는 전부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家は 여태까지와 같이 가족이나 경영체·생활체라는 이른바 ‘대내적’이라는 측면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의 家가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전환하여 村과의 관계 혹은 영주와의 관계 등의 ‘대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즉, 일본의 家체도는 대내적으로는 가족·경영체·생활체로 규정되면서도 그것 자체는 오히려 村제도나 영주의 농민지배, 국가의 국민지배의 제도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녀 왔다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3. 家를 규정짓는 대외적 요인

家の 내부적 관계에만 치중해 오던 종래의 논의에서 탈피하여, 家를 규정하는 외부적 요인에 대해 관심을 돌린 것이 家=株론이라 할 수 있다. 근세의 농민들의 家를 주요대상으로 家와 촌락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덧붙여 家가 家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즉 어떠한 사회단위를 家로 간주할 것인가는 지배의 논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일본의 근대국민국가의 근간이 된 호적과 家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카부(株)로서의 이에(家)

전술한 바와 같이 家は 가옥부지의 등재-한 집분(一軒前)의 家로서의 공인-家적 주종관계의 설정-일련의 부역부담의 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동시에 貢租납입의 책임단위이며, 村내치안의 책임이 부과된 사회단위였던 것이다. 즉, 영주에 대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는 자격을 공인받은 사회단위였다. 그것은 동시에 村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사회단위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家가 일정한 권리·의무의 자격이며 사회단위이라는 것은 家가 ‘카부(株)’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家は 家株, 百姓株, 一打株, 株式, 跡株, 跡株式, 名跡 등으로 불리었다. 家가 株로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우선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家の 계승·상속이 친족관계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친족인 타인에게 양도·계승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家나 同族의 특질로서, 그 구성원에 비친족원이 포함되는 것, 또한 그 계승이 비친족원에 의해서도 행해졌다는 것이 종종 지적되어 왔는데, 그 기본적인 원인은 家가 株로서 존재하였다는 것에 있다고 여겨진다.

또하나, 家가 株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家로서의 자격인정이 '사적'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산을 나누어 사실상의 分家를 하는 것까지는 사적인 사항이지만, 그것만으로는 家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株로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인은 성원자격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취득해야만 하는데, 株에 관한 운영과 의사결정권은 상위의 집단이나 조직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家로서의 인정은 村과 代官所에 속하는 것이었다. 村은 家를 구성 단위로 하여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村을 권리·의무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家株를 단위로 하여 구성된 조직체 혹은 시스템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家株의 수는 고정화된 경우와 증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느 경우라도 우선 村에 의해 결정되고, 최종적으로는 영주권력의 말단기관인 代官所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家=株론은 家를 둘러싼 대외적인 요인을 다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鈴木榮太郎의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신'으로서의 '自然村'을 강조한 鈴木는 촌락을 집단과 집단의 누적으로 보지 않고 고유의 실재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촌락과 家는 이론적으로 같은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는 '사회형상으로서의 家의 본질을 그 집단성 이외의 부분에 인정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으로는 家와 가족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鈴木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가족협동체와 외부와의 관계가 보다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그러므로 '사회적 승인이 특정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현실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승인을 부여하는 외부사회란 바로 촌락사회 즉 '자연촌'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家란 '自然村'이 그 성원으로서 인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그는 '家는 株이며 株는 권리이다'라고 하였고 또한 '家의 상속이 지닌 사회적 의의는, 대외적으로는 株의 상속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株는 村에 있어서의 사회적 位座'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등장한 家=株론은 결코 이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有賀의 이론을 계승한 中根千枝는 家는 同族의 단위일 뿐만 아니라 촌락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단위'라고 함으로써 촌락과 家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였다. 家에 대한 中根의 초기견해는 '거주·경제적인 요소가 그 틀을 결정한다'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것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촌락 특히 근세촌락의 百姓株의 존재에 주목하여 그것이 촌락의 성원권과 관련 있다는 점, 더욱이 그 株는 家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家=株론은 1980년대 이후 다시 검토되기 시작한 이론인 것이다.

(2) 호적과 家

호적이란 국가에 의한 국민등록제도이다. 국가는 이를 통해 피등록자의 가족관계를 매우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률에 의해 일정한 규제를 손쉽게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제도의 원리적 동일성은 이와 같이 법률제도와 현실의 가족을 강력하게 연결하는 호적이라는 존재에 의해 국가의 영향하에서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明治정부 초기부터 실시된 호적법은 戶를 단위로 하여 내부의 호주와의 관계를 밝히고 그 신분관계의 변동을 부가 혹은 삭제함으로써 신분등록의 작용을 함과 동시에, 호주

와 前호주와의 연결을 명기하였다. 즉, 家의 계보도의 관념을 인정함으로써 家系관념을 육성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적법의 제정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황족이외의 ‘臣民一般’에 대해 호적의 편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통일호적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 결과, 호적제도는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해체하고 ‘국민’관념을 창출해 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가가 戸라는 ‘家’를 매개로 하여 국민을 파악하였다는 점, 바꾸어 말하면 모든 국민이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의 관계를 축으로 가족원이 표시된 호적 속에 편성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당시의 호적편제는 구시대의 생활적 단위로서의 戸를 전제로 새로운 家의 규범을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였던 것이다.

둘째, 주소지주의 호적을 채용함으로써 신분별 호적이라는 종래의 방식에 의해서는 완전히 인민총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근본적 결함을 극복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호적에 포괄하게 되었다.

셋째, 호적제도는 국민관념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家’의 관념을 국민일반에게 침투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1873년에 공표된 징병령의 면역규정에서는, 면역대상자로서 호주·적자·적손자 등이 지정됨으로써 사람들은 ‘家’의 존재를 급속히 의식하게 됐다. 그리고 그 ‘家’란 물론 호적제도의 정비를 통해 인지되었던 것이었다. 즉, 동일한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家로 규정하였고, ‘호주 및 가족은 그 家의 氏를 칭하’게 함으로써 일본국민은 자신이 속한 ‘家의 氏’를 자신의 표식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호적제도의 창출은 단순한 국민총인구의 파악, 탈적자의 단속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이러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으며 국가의 기초단위로서의 ‘家’가 여기에서 성립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家와 국가와의 관계성의 구축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근세사회에 존재하였던 家를 둘러싼 촌락공동체나 친족공동체 등의 외적통제로부터 家가 자유롭게 되어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家는 공동체로부터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정면으로 대치하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家는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그 존재를 확고한 것으로 하였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家관념이 커뮤니케이션수단의 발달과 함께 많은 국민에게 침투하고 천황제국가를 지탱하는 하부체제로서, 정통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III. 일본사회의 家적 구성

일본 근세의 농민사회는 家를 구성단위로 하여 구성되고 그것이 상위집단인 村에 긴밀하게 조직화되어 있었다. 村을 떠나서는 家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의 사회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이전에 家와 家의 관계였다. 그리고, 영주와 本百姓과의 신분관계나 지배관계도 家적 주종관계로 존재하였다. 또한 本百姓과 종속농민과의 신분관계도 가내적 관계이며, 특히 本百姓과 비친족의 종속농민

과의 관계는 가내에 있어서의 주종적 관계였다. 이러한 구조는 町人사회에서도 다를 바 없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근세사회는 신분제에 의해 분단되어 있었으면서도 각각의 신분사회는 항상 家를 단위로 구성되고, 家는 상위집단인 村이나 町에 긴밀히 조직화되었으며, 영주의 지배기구의 하부조직이 되었던 것이다. 家臣들의 家도 상위권력인 大名의 家 안에 조직화되었다. 주종관계도 인격적 관계라기보다는 家적 주종관계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일본의 근세사회의 구조적 특질을 ‘家적 구성’이라 규정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家적 구성’은 明治維新이후의 근대사회에도 잔존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까지 하게 된다. 그것은 明治이후의 국가체제나 가족제도의 법제와 이데올로기로서 적극적으로 편성됨과 동시에 사회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관습과 관념으로서 의식적으로 온존시키거나 무의식적으로 잔존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의 근대국가는 가족주의적 국가로 특징지어졌다. 그것과 병행하여 당시의 민법에는 家제도의 존속이 도모되었다. 또한 村은 村一家主義라 불리웠다. 근대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던 기업도, 경영가족주의가 특징이라 여겨졌다. 川島武宣은 이러한 것들을 총칭하여 ‘일본사회의 가족적 구성’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家제도와 가족제도는 개념적으로 구별해야만 하는 것이므로, ‘가족주의’ 혹은 ‘가족적’이라는 말로 부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家제도를 가족적이라거나 가족주의라는 말로 설명할 때에는 항상 家제도를 가족제도의 ‘擬制’로 설명해 왔는데 그것은 家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회의 제분야에 있어서 家적 관계나 家적 구성을 가족제도의 확대라든가 투사로 설명해 온 것에도 문제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국가가 家라고 관념화된 것은 가부장제가족제도나 村一家主義라 하는 郷黨논리를 의제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들의 논리가 국가의 논리에까지 상승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근세의 大名領國은 각각이 國이며 동시에 大名의 家라고 관념화되어왔던 것이므로, 國=家의 관념은 明治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관념도 아니며, 가족제도나 郷黨논리의 의제도 상승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천황제 국가에 있어서의 가부장적 지배도 고대율령제적 천황국가에의 복고에 기인하는 것이었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의제나 상승이라고 해석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의 제분야가 家의 논리로 일원화되고, 양자가 말하자면 동심원적인 중층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구조가 근대일본의 국가주의적 구조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본래 근대국가는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바로 거기에 국민주권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국가는 시민사회와 일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는 국가에 종속되어 강력한 통제와 지배하에 놓여졌다. 즉, 국가가 모든 가치를 점유하고, 그 독점적 결정자로서 존재함으로써 公과 私가 분리되지 않고 사적인 것이 일절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구조를 국가형태나 이데올로기로 설명하지 말고 사회구조의 관점에서 살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근대국가가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시민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패전전의 국가주의와 같이 국민의 사생활을 저변에서부터 훑어내어 구심적으로 국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형태나 지배권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민사회 내에 그것과 결합하는 구조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째, 나라가 家로 관념화되고, 국민의 家와 동질적·동심원적 확대로 간주되며 양자간에는 질적 단절이나 대항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 구조적 기반은 이미 근세 이래의 家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사회적 구조로서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근세사회의 家는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사적 생활과 가족을 그 내부에 포함하면서 동시에 ‘公的’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家는 상위권력이나 상위집단의 하위집단으로서 긴밀하게 조직화되어 있었다. 무사의 家는 ‘家格制’ 질서에 의해 조직화됨과 동시에 大名의 家에 내포되고 농민과 町人の 家는 村과 町의 하위단위로서 행정조직 안에 편성되었다. 中根은, 인도나 중국의 행정은 縣이나 鄉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나, 일본의 경우는 그것이 말단의 민중생활수준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역시 家-村-영주지배의 긴밀한 결합관계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明治維新에 의해 家와 村이 영주에 대해 갖고 있었던 공적 성격은 법제상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나, 家와 村의 집단적 결합형태는 쉽게 해체되지 않았다. 지주·소작관계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家와 村의 관계를 해체시킬 만큼 농업생산력이 상승하지 않았으며 농업경영도 변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까지 家와 村이 가지고 있었던 공적 성격은 가부장제적 성격을 지닌 천황제국가에 대한 ‘공순’한 태도로 대체되고 국가주의 내에 재편성되었다. 민중에게 있어서는 ‘윗분’의 대상이 바뀐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의 근대화는 이와 같은 국가주의 하에서 국가의 주도와 국가의 강력한 통제하에서 진행되었다. 근대화의 목표도 오로지 ‘부국·강병’에 있었다. 자유, 민권, 민주주의 운동은 천황제국가체제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한 사상통제와 탄압을 받았다.

이상과 같은 家적 사회관계나 집단결합은 농촌이나, 가업으로서의 전통산업이나 소영세기업에만 잔존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적 관료조직이나 노사관계 안에도 비공식적인 인간관계나 규범으로서 강하게 남아 있다. 오늘날, 일본인의 사회적 태도의 현저한 특징의 하나로 ‘집단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 집단주의는 횡적인 자주적·자치적 연대로서가 아니라 상하적 지배의 종적인 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집단주의로서 강한 집단응집성을 나타내는데에 그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인의 민족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근세 이래의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家와 村과 지배와의 긴밀한 결합구조 속에서 키워져 온 사회태도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青山道夫. 1975. 「日本の『家』の本質について」. 福島正夫 編. 『家族政策と法』7.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 有賀喜左衛門. 1939. 「岩手縣二戸郡石神村に於ける大家族制度と名子制度」. 『有賀喜左衛門著作集III』. 東京 : 未來社.
- 大石愼三郎・中根千枝 編. 1986. 『江戸時代と近代化』. 東京 : ちくま書房.
- 川島武宜. 1948. 『日本社會の家族的構成』. 東京 : 學生書房.
- _____. 1957. 『イデオロギーとしての家族制度』. 東京 : 岩波書店.
- 喜多野清・正岡寛司 編. 1975. 『「家」と親族組織』. 東京 : 早稻田大學出版部.
- 利谷信義. 1987. 『家族と國家』. 東京 : ちくま書房.
- 戸田貞三. 1937. 『家族構成』. 東京 : 弘文堂.
- 中根千枝. 1970. 『家族の構造』.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 中野 卓. 1964. 『商家同族團の研究』. 東京 : 未來社.
- 福島正夫. 1967. 『日本資本主義と「家」制度』.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